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20

발의연월일: 2025. 1. 3.

발 의 자:김재원·정춘생·김준형

박은정 • 임오경 • 황운하

박정현 · 김선민 · 강경숙

백선희 · 차규근 · 신장식

서왕진 · 김문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행위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예술인 괴롭힘의 금지) ① 예술사업자는 예술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계약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예술인 괴롭힘"이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인 괴롭힘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	10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u><신 설></u>	바.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한
	<u>행위</u>
<u><신 설></u>	제14조의2(예술인 괴롭힘의 금지)
	① 예술사업자는 예술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계약상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
	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
	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예술인 괴롭힘"이라 한
	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술인 괴롭힘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